

(주)앤씨앤 윤리규정

2025. 01. 01

(주)앤씨앤



윤리규정

주식회사 앤씨앤 (이하 “회사”)은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더하여, 회사의 임직원인 우리는 고객 존중, 법규 준수를 통해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고객만족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윤리경영에 바탕을 둔 ‘클린 앤씨앤 (Clean NC&) 윤리 문화’를 확립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본 윤리규정을 실천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윤리헌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규범을 정하고 그 척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 · 고객 ·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임직원은 그 가족 · 친인척 · 지인 등을 이용하여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조 [조직]

본 규정의 윤리강령 담당부서 (이하 “윤리강령 담당부서”)는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제 4 조 [윤리규범]

윤리규범이라 함은 윤리헌장, 윤리규정을 포괄하는 관념적 규범이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 ① “금전”이라 함은 현금 · 수표 등을 포함한 현금등가물, 상품권 · 숙박권 · 입장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② “금품”이라 함은 금전, 부동산 · 회원권 등과 같은 일체의 재산권 및 기타 선물 · 기념품 등 경제적 가치 있는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 ③ “사회통념상”이라 함은;
 1. 정의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충족 요건:
 - 가. 제공자와 수혜자가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한다.
 - 나. 빈번하거나 주기적 · 습관적이지 않아야 한다.
 - 다. 뇌물과 같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전달하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 아니어야 한다.
 - 라. 호화 ·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마. 사회적인 미풍양속이나 관습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④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 관공서 혹은 단체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 · 외의 모든 자연인 ·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⑤ “제보자”라 함은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 ⑥ “향응”이라 함은 접대, 교통과 숙박 등의 편의제공, 퇴폐업소, 각종 오락 시설 등의 수혜를 말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 6 조 [고객 존중]

- 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 정확하게 응답한다.
- ③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 7 조 [고객 보호]

- ①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고객에 대한 정보와 자산은 고객의 승인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제3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 8 조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

- ①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유무형 가치의 증대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전한다.
- ④ 회사 자산의 무단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 취득,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

제 9 조 [평등한 대우]

- ①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② 회사는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 10 조 [회계 원칙에 기한 정보 제공]

-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제 11 조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 ① 회사는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지키며 공정한 상행위를 영위한다.
-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 12 조 [상생 추구]

회사는 협력회사와 상호간 동반 성장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 협력 속에 거래 관계에 임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 13 조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 14 조 [근무환경 조성]

-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6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 15 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자율과 창의적 인재로서 상호 존중,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성실한 법정 교육 이수,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임직원은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이미지 손상 및 특정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6 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 17 조 [내부정보이용 금지]

임직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내 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제 18 조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 19 조 [성희롱 방지]

①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성희롱 방지 사내 교육 등을 통한 철저한 예방 관리에 참여하며, 사내 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제 20 조 [정치관여 금지]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1 조 [권한남용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에 반하거나 자신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성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 뇌물수수 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선물 및/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④ 단, 본 조 상기 항들의 예외로써, 사회통념상 인정범위 내의

경조금/경조물품,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와 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저가의 기념품, 판촉물, 샘플 등의 간소한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23 조 [윤리강령의 준수]

-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회사는 윤리강령 담당부서 주관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7장 기타

제 24 조 [해석 기준]

- ① 본 규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관련 법률, 취업규칙, 윤리헌장, 윤리규정, 윤리문화 운영절차 순으로 그 해석과 적용을 우선한다.

부 칙

이 윤리규정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